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7월 31일, 서영석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6년 8월 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6. 9. 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9. 1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6. 9. 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서영석의원)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의 결격사유로 마약류 중독자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 시 마약류 중독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그러나 허가·지정 이후 마약류취급자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도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에 한하여 필요한 때에만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검사할 수 있을 뿐, 불법 사용을 적발할 수 있는 마약류 검사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 및 그 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마약류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및 제64조제17호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 마약류취급자 및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업무상 마약류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고, 이들의 불법 투약이 마약류의 유통·유통이나 중독 상태에서의 조제·투약 등으로 이어질 경우 국민보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 투약을 조기에 확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은 사법경찰관리가 구체적인 마약류 범죄혐의를 전제로 생체시료를 검사하고,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마약류검사제도를 도입할 필요성과 마약류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유사사례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 및 시행예정법상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군인·경찰공무원,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자동차 등의 운전자 등이 있음. 이러한 입법례는 특정한 직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마약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일정한 경우 검사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개정안의 대상인 마약류취급자 및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군인·경찰공무원 또는 항공종사자·운전자와 같이 마약류 사용으로 인한 즉각적인 안전상 위험을 수반하는 직무를 수행한다고 일률적으로 보기는 어려움. 그러나 업무상 마약류에 접근하기 쉽고, 불법 투약이 마약류의 부적정한 취급이나 불법 유출, 중독 상태에서의 조제·투약 등으로 이어질 경우 국민보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관리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마약류검사제도의 도입 여부는 이러한 유사 입법례의 도입 목적 및 검사대상의 직무상 특성과 함께, 마약류취급자 등의 불법 투약 발생 가능성, 검사의 실효성과 피검사자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검사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여 제도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의 “불법 투약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검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건이나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는 악의적인 민원이나 제보 또는 단순한 정황만으로

검사가 실시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범죄혐의 등 검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유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의료인의 마약류 취급·처방 이력이나 단순한 신고·민원 등이 검사 사유로 폭넓게 활용될 경우 정당한 의료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였음.

따라서 마약류에 대한 접근 가능성 및 불법 투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등을 고려하되,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사 실시 사유를 구체화하고, 검사 사유를 대상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검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검사불응 처벌의 필요성과 처벌요건, 법정형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검사대상자에게 검사응낙의무만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를 두지 않으면 검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검사불응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음. 「항공안전법」과 「도로교통법」에서도 일정한 요건 아래 검사 또는 측정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고 측정불응을 처벌하는 입법례가 있음.

검사 불응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검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측면이 있음. 또한 개정안은 마약류 불법 투약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응낙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검사불응죄의 적용대상이 일정한 범위로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다만, 개정안에 따른 검사요건과

검사방법이 대상자에게 미치는 부담 및 유사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처벌요건과 법정형의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 넷째, 벌칙의 적용범위와 하위법령 위임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안 제41조의2제1항은 제3조·제4조 또는 제5조제1항 위반 중 마약류를 흡연·섭취하거나 자신에게 사용 또는 투약한 경우로 검사대상을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 제64조제17의2호에는 이러한 한정이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검사응낙의 무와 검사불응죄의 적용범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또한, 안 제41조의2제1항은 타액 간이검사 등 검사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다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므로, 검사방법과 절차에 관한 위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서영석)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